

COVID-19에 기인한 기업휴지손해 보상에 관한 연구

- 영국 대법원 판결(FCA v Arch Insurance etc.
[2021] UKSC 1)을 중심으로 -

권 오 정*

<차례> _____

I. 서 론

IV. 주요 쟁점에 대한 평석 및 연구

II. 판결의 배경

V. 결 론

III. 판결의 내용

주제어 : COVID-19, 기업휴지,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 질병약관, 접근금지약관, 추세약관, 인과관계, 병존적 근인, 보험약관의 해석, But-for test

<국문초록> 전세계적인 COVID-19 감염병 유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조치 등 각 국 정부의 통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수한 불가피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최근 영국 금융감독청이 제기한 test case를 통해 영국보험사들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기업성 종합보험 중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담보와 관련하여 영업중단 손해와 COVID-19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해당 약관의 해석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인과관계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의 영국보험법의 기준은 효과 측면에서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본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각각의 COVID-19 발병사례는 정부 제한조치를 초래한 개별적이고 동등한 효과를 가진 근인(a separate and equally effective cause)으로 인정하였고, 이때 영미법상 사실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인 'but for test'는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물리적인 재물손해에 결과적으로 발생한 매출감소 및 수익상실을 보상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같이 재물손해없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험보상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약관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수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상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 논문접수일(2021.05.24), 심사개시일(2021.06.10), 게재확정일(2021.06.17)

I. 서론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생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적 손실은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 전세계 손해보험산업의 COVID-19 관련 지급보험금은 약 미화 2백6십억달러에 달하고, 2021년 지급준비금 적립액은 3백8십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¹⁾ 이는 대부분 사업중단의 결과로 발생한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손해이며 이외에도, 생명보험, 여행보험 및 행사취소보험 손해 등으로 구성된다.²⁾

전통적으로 기업성 패키지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는 기업이 소유한 재물이나 기계에 대하여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화재, 폭발 등의 결과로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특별비용 등을 보상한다. 그러나 기업 경영이 점차로 고도화되고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요인이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부 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에 기인한 영업중단 손실뿐만 아니라 정전, 공급망 중단,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외부의 원인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리스크를 보험계약으로 전가하려는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³⁾

최근 영국 법원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제기한 Test case를 통해 영국 보험 시장에서 주로 식당, 소매상 등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던 기업성 종합보험 중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담보의 COVID-19로 인한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기업보험 상품인 패키지상품에서 기업휴지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피보험자의 재물이나 기계에 대한 물리적 손실에

1) Artemis, "COVID-19 insured loss reports rise 21% in last quarter, near \$38bn", 2021.4.7. (<https://www.artemis.bm/news/covid-19-pandemic-insurance-loss-reports/>) (accessed 25 Apr 2021)

2) 영국보험자협회(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영국보험사들의 2020년 COVID-19 관련 보험금 지급액을 25억파운드(약 35억불)로 추정하며 이중 80%인 20억파운드는 기업휴지손해의 보험금이며, 생명보험 혹은 CI보험이 2억파운드(8.2%), 여행보험 1.5억파운드(6.0%), 행사취소 등 그 외의 일반보험 상품 1.2억파운드(4.8%) 등으로 구성된다고 발표했다(ABI, "COVID-19: Insurers expect to pay up to £2.5 billion for UK insurance claims", 2021.2.20., (<https://www.abi.org.uk/news/news-articles/2021/02/covid-19-estimated-claims/>) (accessed 25 Apr 2021).

3) 이를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휴지(BI)담보와 구분하여 간접적(종속적) 기업휴지(CBI, Contingent (Defendant) Business Interruption) 혹은 이보다 확장된 개념인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Non-PD BI,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라고 한다.

따르는 기업휴지 손해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번 영국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판결 이유의 검토를 통하여 최근 영국 보험법상 보험약관의 해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결 경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아직 우리 기업보험상품에는 없는 새로운 담보 영역인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손해담보'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판결의 배경

1. COVID-19 상황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COVID-19에 의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지역적 봉쇄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혼란과 사업 중단손실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자체적인 리스크 대처 능력이 부족한 식당, 소매상 등 중소기업인 및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2019년말 중국에서의 최초 발병사례보고에 이어 2020년 1월30일에 세계보건기구가 COVID-19의 발생과 '공중보건에 대한 긴급한 국제적 우려'를 선언한 이후, 각 국의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단계별 봉쇄조치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판결문에 포함된 사실관계로 COVID-19의 대규모 감염에 따라 공중보건 목적상 영국 정부가 취한 주요 조치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⁴⁾

- ① 2020.3.16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발표
- ② 2020.3.20 카페, bar, pub 등의 폐쇄권고(수상)
- ③ 2020.3.21 보건사회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에 따른 보건보호조치 발표(The 21 March Regulation)
- ④ 2020.3.23 사업장 폐쇄에 관한 지침 발표 - The 21 March Regulation을 위

4) The FCA v Arch & others [2021] UKSC 1 paras 7-35. 이후에도 2020.7.4.의 강화된 후속조치 등이 있었으나 1심 소송개시(2020.6.9)이후의 내용은 법원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한 사업장이 영업금지 및 벌금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⑤2020.3.26 보다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The 26 March Regulation)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주로 중소기업인들인 피보험자들의 영업을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익상실, 추가비용 등 기업휴지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상 기업휴지담보는 기본 담보대상인 재물에 대한 1차적 물리적 멸실에 따른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지만, 영국 시장의 일부 기업성 종합보험 계약에는 재물의 멸실, 손상 이외의 다른 원인(예를 들면,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병의 발생, 공공기관의 사업장 폐쇄 혹은 이동제한 명령 등)으로 인한 기업휴지를 보상하는 확장담보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COVID-19 발병이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초래된 예상수익의 상실 등 피보험자의 기업휴지 손해를 보험금으로 보상 청구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화재나 홍수와 같은 일반적인 사고 원인에 따른 위험담보와는 달리 전국적인 감염병의 유행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가능성 뿐만아니라 그것을 과연 보험계약상 '사고'로 볼 수 있을지, 사고로 간주하더라도 그 사고의 발생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지, 직접적인 원인인 정부의 조치로서 감염병과 손해발생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2. 영국 금융감독청의 제소

2020년 5월에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COVID-19 보상과 관련한 기업휴지보험의 계약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리적 손실에 기반하지 아니한 기업휴지보험 약관의 해석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Test case(판례로 남길 본보기 소송)를 제기하였다.⁵⁾ 영국 금융감독청은 이번 Test case로 인해 약 8,500개의 보상청구 건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는 약 12억파운드(16.5억불)에 달하며 60개의 보험사가 판매한 700종류의 상품과 370,000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⁶⁾ 특히 영국 금융

5) Test case는 이를 통해 모든 가능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보험계약자들과 보험자들에 게 몇 가지 계약상 불분명한 점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기업휴지담보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약관의 해석을 통해 보험보상(혹은 지급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감독청은 COVID-19로 인한 긴급한 위기 상황과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보상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소송은 관련 보험약관이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 사건에서 기업휴지손해는 COVID-19 유행 및 영국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취한 공중보건 조치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Financial Market Test Scheme에 따라 8개 보험사(Arch, Argenta, EIO, Hiscox, MS Amlin, QBE, RSA, Zurich) 와의 합의아래 법률적인 기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Test Case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원고로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표하였고 두 보험계약자 단체(Hospitality Insurance Group Action, Hiscox Action Group)도 소송참가인으로 포함되었다.

III. 판결의 내용

1. 주요 쟁점

1심법원은 관련된 21개의 보험약관을 검토하였다. 1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약관상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담보로 COVID-19 유행과 정부 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와 약관상 담보위험간 필수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및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세 약관의 영향이 있는지가 다루어졌다. 1심 법원은 해당 약관의 효력에 관한 영국 금융감독청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국 금융감독청은 몇 가지 인용되지 아니한 쟁점⁶⁾에 대해 Hiscox Action

6) The FCA v Arch & others [2020] EWHC 2448 (Comm) para 7; The FCA v Arch & others [2021] UKSC 1, para 3.

7) ① 이미 부보시점 이전에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의 사업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COVID-19 손해의 보험보상 관련성 여부와 그 정도, ② 법률의 권능없이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취해진 조치들이 접근금지 및 복합약관에 적용되는지 여부, ③ 접근금지 및 복합약관의 적용을 위하여 부보사업의 전

Group(원고측 소송참가인)과 더불어 항소를 제기하였다. 6개 보험사(Arch, Argenta, Hiscox, MS Amlin, QBE, RSA)도 쟁점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로 영국 금융감독청의 주장에 맞섰다. 제기된 쟁점의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인해 항소는 비약상고(leapfrog) 절차에 따라 항소법원(2심)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검토되었다.

영국 대법원이 검토한 주요 쟁점들은 아래와 같다.

- ① 질병약관(사업장 내부 혹은 사업장에서 일정한 지리적 환경내에서 신고대상 질병이 발생한 결과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를 담보)⁸⁾의 해석문제
- ② 접근금지약관(사업장의 사용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당국의 간섭(조치)의 결과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를 담보)⁹⁾의 해석문제
- ③ 기업휴지손해와 신고대상질병(혹은 관련 약관상의 특정된 다른 담보위험)의 발생간 어떠한 인과관계가 시현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 ④ 추세약관(사업의 성과를 이전 거래기간과 비교함으로써 기업휴지손해의 규모를 산정하는 표준적인 방법)¹⁰⁾의 효과

면적인 중단 요구하는지, 혹은 매장에서 식음료 영업만 금지하는 것과 같이 일부 사업의 중단에 따른 사업의 근본적 변화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④ 약관 문구상 사고발생(incidents 혹은 events)이 일정한 범위(25마일내)의 발병사례에만 적용되는지 여부(FCA, “Claimant’s Application For A Leap-Frog Certificate Pursuant to S.12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1969”, 2020.9.28.)

- 8) “We shall indemnify You in respect of interruption or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during the Indemnity Period following:
 - a. any
 - i. occurrence of a Notifiable Disease (as defined below) at the Premises or attributable to food or drink supplied from the Premises;
 - ii. discovery of an organism at the Premises likely to result in the occurrence of a Notifiable Disease;
 - iii. occurrence of a Notifiable Disease within a radius of 25 miles of the Premises;(The RSA 3 policy wording, [2021] UKSC 1, para 50.)
- 9) “loss ... resulting from ... Prevention of access to the Premises due to the actions or advice of a government or local authority due to an emergency which is likely to endanger life or property” (Arch wording, [2021] UKSC 1, para 96.)
- 10) “Rate of Gross Profit and Standard Turnover may be adjusted to reflect any trends or circumstances which
 - (i) affect The Business before or after the Prevention of access to The Premises due to the actions or advice of a government ... due to an emergency which is likely to endanger life [or]
 - (ii) would have affected The Business had the Prevention of access to The Premises due to the actions or advice of a government ... due to an emergency which is likely to endanger life not

- ⑤기업휴지손해 산정시 보험개시전에 발생한 감염병이 부모사업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⑥인과관계 및 추세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Orient-express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2. 판결의 내용 및 판결 이유

대법원에서 영국 금융감독청의 주장은 대부분 인용되고 보험자들의 주장은 각하되었다(Lord Hamblen & Lord Leggatt, Lord Reed는 동의). Lord Briggs에 의한 별개의 병존적 판단도 제시되었다(Lord Hodge 동의)¹¹⁾. 아래는 각 쟁점별 판결 내용이다.¹²⁾

①질병약관

대법원은 RSA 증권(RSA 3)에 포함된 약관의 내용을 질병약관의 표본으로 검토하였다.¹³⁾ 해당 약관 조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a notifiable disease)이 사업장으로부터 별도로 정한 지역적 범위(25 마일)내에 발생함에 따른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한다. 1심 법원은 질병약관을 2020년 3월 5일자로 당국에 의해 신고의무 질병으로 규정된 COVID-19로부터 결과한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며, 해당 감염병이 약관에서 정한 지역적 범위내에 최소한 한 건이라도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⁴⁾ 대법원에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담보 범위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에 따라 1심 법원의 판단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으나,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과는 다소 다른 판단을 하였다.¹⁵⁾ 대법원은 보험자들의 다음

occurred.” (Arch wording, Ibid. para 258.)

11)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1심의 판단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 제시가 있었다. 먼저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의 기준에 의한 보편적 약관해석원칙을 기반으로, COVID-19 감염사실을 약관 전체로(as a whole) 해석하면 사업장내 혹은 반경내 개별 발병사례가 없어도 약관상 담보위험으로서 성립됨을 주장했다. 둘째로 약관상 발생사고(occurrence)를 상황에 따라 시점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1심의 주장을 지지했다. 셋째로 국가적 유행에 따른 국가적 조치에 의한 기업휴지손해는 반경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2)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Press Summary -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v Arch Insurance (UK) and others* [2021] UKSC 1, 2021.1.15. 참조

13) [2021] UKSC 1. para 54.

14) [2021] UKSC 1. para 64.

두 가지 주장을 인정하였다. (1) COVID-19의 유행에 따른 개별 발병사례만이 보상대상인 발생사고(occurrence)이다.¹⁶⁾ 발생사고(occurrence)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따라서 COVID-19의 개별적인 감염사례는 보상 대상인 발생사고가 될 수 있으나, 질병 그 자체는 사고가 아니며, COVID-19의 대유행도 약관상 사고로 볼 수는 없다. (2) 해당 조항은 반경내에 발생한 감염사례들로부터 결과한 기업휴지손해만을 담보한다.¹⁷⁾ 즉, 약관상 정해진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까지 담보위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접근금지 및 혼합약관

접근금지 및 혼합약관¹⁸⁾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일련의 요건을 포함한다. 일부 조항은 신고대상질병의 발생에 따라 당국이 제한을 부과(restriction imposed)해야만 적용된다. 1심법원에서 이러한 요건은 법적효력이 있는 의무적 조건으로 명시된 조치에 의해서만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지나치게 협소한 것으로 보고 부인했다. 즉, 당국에 의한 지시가 법적인 강제적 압박한 위협을 담고 있거나 혹은 법적 권능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의 준수를 지시하는 것이 강제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포함된다면, 부과된 제한(restriction imposed)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대법원은 개별적인 조치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몇몇 일반적인 조치들, 예를 들면 영국총리가 발표한 강제적 조치 및 지시 사

15) [2021] UKSC 1. para 61.

16) [2021] UKSC 1. paras 67-69, 이는 불확정성, 발생 가능성 등과 더불어 보험사고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성은 보험사고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152면).

17) [2021] UKSC 1. para 71, 1심에서는 사업장내 혹은 정해진 반경내에서 1건의 발병사례라도 있다면 전국적인 유행은 담보위험이 된다고 보았다. ‘신고대상질병’의 개념이 매우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전국적인 유행과 그 대응을 전제로 하며, 사업장으로부터 25마일이라는 범위를 정한 것도 사업장 바깥의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발병을 사고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계약의 정장’으로 보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8) 보험사별로 질병약관이 별도로 없는 상품에서 질병약관과 접근금지약관의 혼합(hybrid)약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19) [2021] UKSC 1. para 121.

항들은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Hiscox사의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사업장 사용불능(inability to use)에 의한 기업휴지손해만을 담보한다. 1심에서 이것은 전면적인 사용불능이어야 하고, 단지 사업장 일부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방해가 아닌 사용불능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전면적 사용 불능의 요건의 해석을 완화하여 그것이 전체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자의 분리된 사업장(discrete part of the premises)의 사용 불능 혹은 분리된 사업행위(discrete part of the business)의 사용 불능(예를 들면, 봉쇄조치로 인한 식당의 대면 고객영업 불가시에도 배달영업은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았다.²⁰⁾ 대법원은 사업장의 접근금지(restriction)를 요구하는 약정도 보험계약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와 유사하게 해석하였다.²¹⁾

③ 인과관계

질병약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핵심 질문은 부보사업장으로부터 정해진 범위내에 발생한 발병사례에 기인한 COVID-19와 이에 대응하여 취해진 당국의 공중보건조치의 결과로 인해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1심법원은 관련 조치가 국가 전체로 모든 COVID-19 발병에 대한 정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도 1심판단과 같이 정부조치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COVID-19 개별 발병 사례는 그 조치(및 그에 대한 공적대응)의 동등하게 유효한 근인으로 판단했다.

보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복수의 사고 원인이 관련되는 경우, 만일 두 번째 사고는 첫 번째 사고가 없다면(but for)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 먼저의 사고는 법률적으로 다른 이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²²⁾ 과연 사업장내 혹은 약관에 정해진 지리적 반경내 COVID-19의 개별 발병 사례가 없었더라면(but for) 보험계약자의 기업휴지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20) [2021] UKSC 1. para 137.

21) [2021] UKSC 1. paras 146-157, 일반적으로 제한의 부과는 부보된 사업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보상의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 정부의 주거지 제한이나 봉쇄조치로도 일부 사업장에는 사용불능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직접적 접근금지 혹은 제한이 아닌 경우도 약관상 접근금지로 인정될 수 있다.

22) [2021] UKSC 1. paras 177-185.

것인가? (2) 정해진 범위 안밖에서 발생한 발병사례들은 누적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정부 조치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원인은 약관에서 정한 지역적 반경내에서 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한 전국적인 COVID-19 발병 사례들이다.²³⁾

대법원은 보험자의 첫 번째 항변에 대해, 먼저 사실적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을 위한 'but for test'가 때때로 부적절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면서²⁴⁾ 본 사건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고가 하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중 어느 것이라도 그 하나만으로는 초래된 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필요하거나 충분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보험계약자가 기업휴지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혹은 일정 반경내 발생한 COVID-19 발병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당국의 대응조치의 결과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각각의 COVID-19 발병사례는 정부 제한조치를 초래한 개별적이고 동등한 효과를 가진 근인(a separate and equally effective cause)²⁵⁾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인 보험자의 비중(weighing) 접근 항변은 실행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²⁶⁾

접근금지 및 복합약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기업휴지손해를 야기하는 인과관계의 연속성내에 작동되는 모든 담보위험에 따른 리스크를 보상한다고 보았다. 여기서는 COVID-19의 유행이라는 동일한 근본적 우연성을 초래한 다른 (부보되지 아니했으나 면책위험은 아닌) 결과가 손해의 병존적 원인인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추세약관

추세약관은 기업휴지손해의 산정 기초와 관련하여 전년도 사업실적을 이전의 추세 혹은 다른 사업상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보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달성했을 결과를 가능한 근접하게 추정하려는 것이 목

23) [2021] UKSC 1. paras 198-200.

24) 두 명의 사냥꾼이 동시에 실수로 발포하여 등산객이 사망한 경우에, 의학적으로 어느 한 사냥꾼의 사격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발포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라면, 'but for' test에 따른 경우 그 누구의 발포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2021] UKSC 1. para 182).

25) [2021] UKSC 1. para 211.

26) [2021] UKSC 1. paras 202-205.

적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관은 담보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를 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았다.²⁷⁾ 그리고 약관상 고려되어야 할 추세와 사정은 담보위험과 동일한 기본 혹은 근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사정(즉, 본 사건에서는 COVID-19 대유행의 효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부보시점이전에 발생한 손해의 영향

1심법원은 조건을 붙여서 추세약관의 적용에 따른 손해조정을 허용했다. 이는 부보위험이 개시되기전에 COVID-19로 인한 사업매출의 산정 가능한 감소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을 부인했다. 대법원의 추세약관 해석에 따르면, 손해액 조정은 COVID-19와 관련없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담보위험 이외의 다른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⑥ Orient-Express 판례²⁸⁾ 에 대한 입장

오리엔트-익스프레스 호텔 사건은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 소재 호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에 따른 기업휴지손해의 보상 불인정 판결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은 본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추세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판례에서 세 명의 합의재판관(Mr George Leggatt 포함)과 항소심의 Hamblen 판사는 보험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즉, 호텔 자체가 직접 허리케인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고, 뉴올리언즈시 전체의 허리케인 피해에 따라 어차피 호텔 영업을 불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험자들은 이러한 판결에 의거하여 손해의 인과관계 주장과 본 사건 추세약관의 효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주장했다.

1심은 오리엔트-익스프레스 판결은 잘못 결정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동의하였다. 1심에서 오리엔트-익스프레스 사건은 복합적인 다수의 근인을 다룬 사례는 아니지만, 기업휴지담보의 부보 위험을 오인했고 기업휴지담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허황된(illusory)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았다.²⁹⁾

27) [2021] UKSC 1. para 264.

28) Orient-Express Hotels Ltd v Assicurazioni Generali SpA [2010] EWHC 1186(Comm).

29) [2020] EWHC 2448 (comm) para 281. 허리케인에 의한 뉴올리언즈시의 광범위한 피해에 따라 직

IV. 주요 쟁점에 대한 평석 및 연구

1. 약관의 해석

(1)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본 사건에서 확인된 보험약관해석의 일반원칙은 그것이 객관적으로(objectively)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당시 계약의 당사자들은 합리적으로 획득 가능한 배경 지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의도된 계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³⁰⁾ 약관 해석시에 대립되는 해석이 가능할 때는 어떤 해석이 좀 더 거래의 상식(commercial common sense)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해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³¹⁾ 다만 거래의 상식적인 해석 기준은 약관 내용을 소급하여 계약을 새로 정의하는 것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³²⁾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심에서는 질병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사업장내 혹은 정해진 일정 반경내 한 건이라도 발병사례가 있다면, 전국적인 감염병 유행을 담보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것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허용할 수 없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즉, 약관에서 정한 지역적 반경 바깥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³³⁾

(2) 일반면책조항의 해석

본 판결에서 검토한 RSA 증권에는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section에 적용되는 일반면책조항(general exclusions)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열거한 여러 면책항목 중 전염병 및 질병(epidemic and disease)을 명기하고 있다.³⁴⁾ 이로써 보

접손해가 없더라도 어차피 기업휴지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은, 기업휴지손해 발생이 여하한 사고원인(예를들면 해충이 발견된 식당에 손님이 가지 않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기업휴지가 발생되는지?)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나친 포괄적 해석이 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30) [2021] UKSC 1. para 47.

31) Hart v Standard Marine Insurance (1889) 22 Q.B.D. 4992.

32) Arnold v Briton [2015] UKSC 36, [2015] AC 1619.

33) [2021] UKSC 1. para 95.

34) "Applicable to all sections other than section 5 - Employers' Liability and section 6 - Public Liability

험자는 확장담보사항인 질병약관의 담보는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 및 대법원은 서로 불일치하는 담보가 하나의 증권에 공존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약조항이 합리적인 사람(a reasonable person)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실시했다.³⁵⁾ 본 사건의 보험상품은 주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고, 계약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전체 보험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전문가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상 주로 보상하는 위험 정도만 이해할 뿐이다. 일반면책사항으로 열거된 단어 하나로 기업휴지손해를 확장 담보하는 질병약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상의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일반면책사항으로는 COVID-19 담보가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및 소결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표준적, 정형화된 조건을 미리 작성한 표준조항을 사용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이러한 부합계약성은 보험계약의 기본적 특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별로 약관을 달리 적용하거나 해석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에서는 일반 법률행위나 계약의 해석과는 달리 보험계약에서는 개별 계약당사자의 계약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기준으로 약관을 해석한다.³⁶⁾ 이는 영국에서와 동일하다.

면책조항의 해석은 주어진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야하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중

Contamination or Pollution Clause

a) The insurance by this Policy does not cover any loss or Damage due to contamination pollution soot deposition impairment with dust chemical precipitation adulteration poisoning impurity epidemic and disease or due to any limitation or prevention of the use of objects because of hazards to health.“

35) [2021] UKSC 1. para 77.

36)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확실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담보제외사유(exclusion)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처음부터 제외하여 담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반면 책임면제사유(exception)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³⁷⁾

본 소송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원칙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본 사건 보험계약의 특성이 가계성 보험과 유사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업휴지담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약관해석이 내려졌다. 특히 보험약관의 일반면책사항으로 명기된 내용일지라도 보험계약자의 상황을 고려한 상식적 해석에 따라 그것이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은 보험자들이 상황에 따른 약관구성 및 해석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보험약관의 해석은 구문의 의미에 충실하기보다는 개별 보험계약의 특성이 먼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인과관계

(1)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쟁점은 질병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업장 내 혹은 부보사업장으로부터 특정한 범위내 COVID-19의 감염사례가 보험계약자의 기업휴지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고의무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사업의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칭하는 약관문구상 표현은 ‘~에 따르는(following),’~의 결과로서(as a result of),’~로 기인하는(arising from),’~의 결과(in consequence of)’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³⁸⁾ 법원은 비록 손해가 담보하는 위험에 기인했는지 여부의 문제는 약관 해석

37) 이러한 구분에 따라 우리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사항은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책임면제사유(exception)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세민, 앞의 책(16), 762면).

38) 위의 영국해상법 제5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보험증권에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Miss Jay Jay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정 면책사항(목시담보)인 불감항(unseaworthiness)과 관련하여, 동법 제39조 제5항에서 선주의 악행(privy)이 있는 때 불감항의 상태로 항해에 나선 때에 불감항에 기인한(attributable to) 손해는 보험자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다. Susan Hodges교수에 따르면 ‘(proximately) caused by’와 ‘arising from’은 판례법상 근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reasonably) attributable to’는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근인에 비해 다소 덜 엄격하고 덜 특정적이다. ‘consequences thereof’도 ‘caused by’보다는

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약관 구문의 언어적 의미에 의존하거나 약관에 사용된 단어들이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³⁹⁾

‘만일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면, 일반적으로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가 긍정된다(‘but for test’)⁴⁰⁾. 보험자들은 만일 보험계약자의 사업장이나 특정한 범위내에 COVID-19의 감염사례가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자의 사업중단 손실이 발생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B 사건이 이전의 A 사건 발생과 상관없이 발생했다면, A는 B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But for’ 테스트의 명확한 약점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을 잘못 배제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A가 B의 근인 혹은 인과관계로 간주되지 않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배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¹⁾ 결국 ‘Bur for test’는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고 이 때 특정한 개별 원인만으로는 결과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법리

인과관계 문제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영국보험법 체계에서는 근인(proximate cause)의 법리가 정립되어 있다.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보지 말라(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원칙에 따라 Lord Bacon은 ‘법률이 원인의 원인을 판단하고, 원인의 상호간에 대한 여러 원인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한한

넓은 의미이나 근인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Susan Hodges, *Cases and Materials on Marine Insurance Law*, London: Cavendish Publishing, 1999, pp.357-362).

39) [2021] UKSC 1, para 162.

40) 영미법체계에서 ‘but for test’는 사실적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을 위한 일반적 수단이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로부터 일반인(reasonable person)의 기준에서 그 결과의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을 살펴보고 그것이 긍정된다면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적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까지의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미불법행위법의 원칙이다(박덕영 역, 『영미법 입문』, 박영사, 2013, 87-91면).

41) 법원이 사례로든 두 사냥꾼의 동시 오발사건의 사례(각주 22)의 경우, 어느 한 사냥꾼의 발포만을 사고원인으로 특정한다면, 실제로 사고의 원인일 수 있는 다른 사냥꾼의 발포를 사고원인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사고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로 사고의 원인이 아닌 사냥꾼의 발포를 사고의 원인에서 배제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것이며, 따라서 법률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⁴²⁾ 이는 1906년 해상보험법의 규정으로 법제화되었다(제55조 제1항)⁴³⁾. 다만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인성을 사고발생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최후조건(시간)설), 아니면 다른 직접적 연관성으로 볼 것인지(직접효과설)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해석되었다.

그러나 1918년의 Leyland 사건⁴⁴⁾ 이후로는 최우력 효과설이 통설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손해의 원인이 존재할 때 그중에 가장 유력한(dominant) 또는 유효한(efficient) 하나의 원인이 근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시간적 순서라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폐기되면서 복수의 근인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과 달리 손해 발생에 여러 가지 사실적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우월적인 근인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유력한 근인을 선택하는 판단기준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a broad common sense view of the whole position)’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로 정립되었다.⁴⁵⁾ 하지만 상식적 관점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기준이 되기는 어렵다.⁴⁶⁾

42) Thompson v Hopper(1856) 26 LJQB at 22, 23 (최병수/이재복, 『영국해상보험법』, 보험연수원, 1983, 160면에서 재인용).

43)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보상손해와 면책손해)

(1) 본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와 보험증권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4) Leyland Shipping Co Ltd v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Ltd [1918] AC 350, HL 본 사건에서 원고는 Ikaria호의 선주로 피고인 보험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 중이었다. 보험계약상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은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상되는 위험이었고, 적국의 적대적 위협에 따른 전쟁 위험은 면책위험이었다. Ikaria호가 남아메리카 항해를 마치고 르하브르항구에서 도선 대기중에 독일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고 손상을 입어 1번 선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었다. 선원들이 손상된 선박을 항구내로 운항하였고 항내에서는 수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마침 돌풍이 불었고 손상된 선박이 부두와 충돌하여 항내에서 침몰할 경우 항구를 막게 될 것을 우려한 르하브르 항만당국이 선박을 외항에 묘박하도록 명령했다. 선박이 외항에서 묘박중에 기상이 나빠졌고 결국은 기뢰로 인한 손상부위로 해수가 침입되어 좌초후 이틀후 침몰했다. 선주는 해상고유의 위험(악천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악관상 전쟁위험 면책을 주장했다. 상원(현재 대법원)에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뢰로 인한 손상(전쟁위험)을 유효한 근인으로 판단하고 보험사의 면책항변을 인정했다.

45) Jonathan Gilman et al.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9thed., Sweet & Maxwell, 2018, para 22-04 (p.1040) 우리 대법원에서도 영국법 준거조항이 있는 선박보험계약에서 이러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동등한 효력을 가진 복합적(combination) 혹은 병존적(concurrent) 근인의 문제⁴⁷⁾에 대한 판단은 이후 영국 판례들에서 다루어졌다.

① 여러 근인이 모두 계약상 명시적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⁴⁸⁾

요트 ‘Miss Jay Jay’호는 선박기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980년 7월, 영국과 프랑스간 왕복항해에서 악천후를 만나 귀환하던 중 요트 선체의 손상을 발견하였다. 선주는 보험증권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요트가 조악한 설계로 인해 불감항의 상태였고 손상의 책임은 보험자가 아닌 선박건조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항소법원은 선체의 손상이 악천후와 조악한 설계의 복합적 요인에 모두 근인하였다고 판단했다. 두 원인 중 하나는 담보되는 위험(악천후)이고 다른 하나는 면책위험(불감항)이지만 불감항은 계약상 명시적으로 면책되지 아니한 법률상 면책위험이었다. 법원은 하나의 해상사고에 두 가지의 병존적 원인이 인정되고, 하나는 보험계약조건의 범위내에 있고(악천후), 다른 하나는 계약상 명시된 담보 범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조악한 설계에 따른 불감항 상태)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⁴⁹⁾

② 여러 근인중 하나가 명시적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경우⁵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작용 점토에 쓰이는 액체 왁스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장

46) 박세민 교수는 여러 위험들중 어떤 위험이 손해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 측면에서 결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의 판단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의 정도가 일정하지 아니하지만, 신중한 보험자의 기준은 업계의 거래 통념을 기반으로 효과의 우월성 등에 대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세민, “해상보험법상의 인과관계이론(principle of causation)에 관한 해설”,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7.11., 313면) 그러나 업계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효과적 근인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므로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7) 병존적 원인(concurrent causes)은 각 원인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이는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복합적 원인(combination of causes)이라는 포괄적 표현이 더 적절하다(Jonathan Gilman et al., op. cit., para 22-28(foot note 189)).

48) Lloyds (JJ) instrument Ltd v Northern Star Insurance Co Ltd, ‘Miss Jay Jay’ [1987] 1 Lloyd’s Rep 32 CA.

49) ibid, 핵심적인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It now seems settled law, at least as far as this court is concerned, that, if there are two concurrent and effective causes of a marine loss, and one comes within the terms of the policy and the other does not, the insurers must pay.”

50) Wayne Tank Pump Co Ltd v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Corporation Ltd [1973] QB 57, CA

치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상 보상위험은 '사고로 인한 재물손상의 결과로 부과된 손해배상금'이고, 면책위험은 '보험계약자에 의해 판매 혹은 배송된 제품의 조건이나 성질에 따른 손해에 결과한 배상책임'이었다. 설치작업이 개시되었으나 최종테스트 전에 가열탱크를 밤새 켜두었고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소손되었다. 원고는 공장주에게 15만 파운드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항소법원은 두 가지 사고 원인을 대등한 효과를 가진 근인으로 판단했다. 하나는 설치작업 자체의 위험한 성질(명시적 면책위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설치를 위해 가열탱크를 켜둔채로 밤새 방치한 작업자의 과실(부채위험)이었다. 법원은 손해에 동등한 효력을 끼친 두 근인중 하나가 계약상 명시된 면책위험인 경우, 면책조항은 계약의 일반조항에 우선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③ 복수의 근인을 부인한 경우⁵¹⁾

한편 2011년 Cendor MOPU사건 판결에서는 원유시추장비의 미국과 말레이시아간 부선운송관련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대양항해 중 발견된 시추장비 지지대에 발생한 균열손해가 통상의 항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마모', 혹은 '화물 고유의 하자'⁵²⁾인지 아니면 파도와 같은 외부적 작용의 개입에 의한 사고인지가 다투어졌다.⁵³⁾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두 개의 대등한 근인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해당 사건에서 약관상 면책위험인 화물의 내재적 하자가 근인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보험자의 부채판단을 하였다.⁵⁴⁾

51) Global Process Systems Inc and Another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The Cendor MOPU) [2009]EWHC 637(Comm), [2010] 1 Lloyd's Rep 243(CA); [2011] 1 Lloyd's Rep 562 (SC)

52) 협회적하보험약관(ICC(A)-1/1/82) 제4조 (일반면책조항) 제2항 및 제4항

53) 협회적하보험약관(ICC(A)) 조건은 별도로 명기된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위험 이외의 모든 손해(all risks)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 방식이다.

54) 이점에서 한창희 교수는 본 판결로 두 개 이상의 근인을 인정한 종래의 판시가 파기된 것으로 해석하였다.(한창희, 『해상보험법』, 국민대학교출판부, 2017, 180면) 그러나 Arnould 저자들은 본 판결로 인해 이후 다른 사안에서 복합적인 근인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Wayne Tank 사건으로 확립된 면책위험 우선적용원칙은 (약관상 면책위험이 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Jonathan Gilman et al., op. cit. para 22-33(p.1079)) 해당 판결에서도 '고유의 하자가 그 중 하나인 두 가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근인이 존재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두 개의 근인이 존재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지배적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소수의견도 제출되었다(Clarke판사, Sumpston판사).

(3) 소결: 우리 법과의 비교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손해의 발생, 귀책사유, 위법성과 함께 가해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⁵⁵⁾ 인과관계이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서의 원인 결과간 개연성 및 불가피성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경험칙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성은 여러 복수의 원인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로써 손해배상의 범위의 문제는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아래 한꺼번에 처리되어 왔다.⁵⁶⁾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량거래와 부합계약성을 가진 보험계약에서, 같은 종류의 결과를 초래하는 여러 원인을 유형화한다는 측면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⁵⁷⁾ 우리 법원은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다.⁵⁸⁾ 한편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우리나라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효과 측면의 근인설을 인정하고 있다.⁵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법원은 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 대체로 효과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의 원인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최유력 근인설

55) 명순구, 『민법학원론』 보정판, 박영사, 2017, 160면(채무불이행), 310면(불법행위).

56) 그러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재산손해, 위자료,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등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박세민, 앞의 논문, 314-315면).

57) 경익수,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386면.

5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59)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 여기서 근인이라 함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기본적으로 해상위험의 속성을 육상위험에 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성격으로 보고, 손해 발생시 그 원인을 밝혀 약관상 담보위험인지 면책위험인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구중순/조성원, “해상보험에서 근인의 입증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1권, 한국해운물류학회, 1995, 405-406면).

을 통설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개별적이고 동등한 효과를 가진 복합적인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but for test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약관에서 정한 지리적 환경내 COVID-19 발병사례가 하나라도 보고된다면 그것을 기업 휴지손해의 동등한 효과를 가진 여러 근인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복합적 혹은 병존적 근인의 하나가 약관상 면책위험인 경우에는 Wayne Tank Pump 사건으로 확립된 면책위험 우선 적용 선례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우리나라의 기업휴지담보 현황과 개선방안

(1) 현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보험상품인 패키지보험은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문인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s cover)은 피보험자의 사업장내 소유자산에 대해 담보위험(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별도 면책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한 위험)에 기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제2부문은 기계 및 전기적 위험(Machinery Breakdown cover - 기계적인 사고, 전기적인 사고, 종업원 부주의, 기술부족, 추락, 이물질 유입에 의한 고장 등)을 담보하며, 제4부문인 일반배상부문(General liability cover)은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따른 배상책임위험(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소송 등에 따른 법률비용 등)을 담보한다. 제3부문은 기업휴지부문(Business Interruption cover)로서 여기서는 1부문(재산종합위험담보) 혹은 2부문(기계위험담보)의 사고로 인하여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피해의 복구 및 성공적인 재가동 그리고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확보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간접손실(즉 가동중단 또는 가동을 저하에 따른 수익의 감소)을 보상한다.⁶⁰⁾ 그러므로 기업휴지손해의 보상 요건은 ① 1부문 혹은 2부문의 담보위험으로 인한 사고발생 및 물적 손실 ② 이에 따른 조업중단 및 생산감소 ③ 결과적인 매출액 감소 및 총이익(Gross Profit)⁶¹⁾ 상실 발

60) 국내 S손해보험사의 2020년도 패키지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중 제1부문인 재산종합담보부문의 비중이 72%로 대부분이고, 제3부문인 기업휴지손해담보부분은 약 8%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1)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총이익(Gross Profit)을 기준으로 하고, 총이익은 기중 매출액과 기말재고액의 합계액에서 기초재고액과 변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해서 산출한다.

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패키지 보험내 기본적인 기업휴지보험담보는 사업장내 보험계약자의 보유자산에 대한 물리적인 사고 및 손실의 발생을 전제로 이에 따르는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한다. 제3부문의 추가선택담보조항에는 ‘구의 동력시설(off-premises power)’담보조항이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및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에 증권상 보상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파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조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한다. 유틸리티 공급자의 기업휴지에 의한 간접적인 기업휴지(Contingent/dependent Business Interruption) 손해를 보상하는 추가담보이다. 여기서도 담보리스크는 공급자의 재물손해를 수반하는 화재, 기계결함 등으로 제한적이다. 즉, 보험계약자나 유틸리티 공급자의 재물손해가 없는 기업휴지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물리적 손실이 없는 기업휴지(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손실에 대한 기업의 담보 공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⁶²⁾ 글로벌 보험사인 Allianz의 연례조사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예상되는 글로벌 기업의 주요한 사업 리스크는 기업휴지(공급망 중단), 감염병 발생(사업장 접근제한), 사이버 리스크, 시장 변동성(경쟁, 가격등락 등), 제도과 법규의 변동 순으로 조사되었다.⁶³⁾ 물리적 손실이 없는 기업휴지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문제, 국제정치적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감염병 발생 및 사이버 리스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이처럼 기업휴지 손해는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보험상품에서는 담보위험에 기인한 보유자산의 물리적 사고 발생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을 대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판결의 대상계약인 영국의 중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보험계약에서는 비록 확장담보의 형태이지만 ‘물리적 손실이 없는 기업휴지’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유례가 없는

62) 송윤아/한성원,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20, 36-139면 참조

63)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LLIANZ RISK BAROMETER - identifying the major business risk for 2021”, 2021.1. (<https://www.agcs.allianz.com/news-and-insights/reports/allianz-risk-barometer.html>) (accessed 25 Apr 2021).

전세계적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험산업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⁶⁴⁾ 영국의 로이즈에서는 COVID-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중단기적 조치로 보험사들의 합리적인 수준의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담보의 제공을 촉구하고 있고⁶⁵⁾ 나아가 향후 감염병의 장기화, 일상화에 따른 대재해 발생을 대비한 정부와 산업간의 협력을 통한 보장구조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V. 결 론

2019년 말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COVID-19의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전세계 정부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역봉쇄 등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상 영업중단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영국 대법원은 영국금융청이 제기한 중소기업인 대상

64) 해외 주요 국가들은 COVID-19 확산에 따라 기업과 가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제 부담 완화, 각종 손실 및 비용인정 범위 확대,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의 직접적 피해구제를 진행해왔다. 국가별 정치 상황, 재정상태 등에 따라 조세지원의 강도 및 유형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정책적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공적 구제책을 시행해왔다(국회에산정책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NABO Focus」 제16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4.). 영국 대법원에 의해 이론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본 판결로 인해 민간부문인 보험영역에서는 보험계약상 관련 약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COVID-19에 기인한 기업휴지손해를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도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손해와 같은 새로운 보장영역 확장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65) 로이즈는 Restart라고 불리는 물리적 손실이 없는 기업휴지담보 상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인들이 감내 가능한 보험료와 보상한도를 제공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Recover Re라는 사고발생 후 소급 보험상품으로 COVID-19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손실없는 기업휴지담보를 제공하자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Black Swan Re라는 프로그램은 정부와 산업간 협력으로 운영되는 테러보험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향후 전염병, 공급망 실패, 인프라 중단 등 대재해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Lloyd's, Supporting global recovery and resilience for customers and economies - The insurance industry response to COVID-19),2020 (https://www.lloyds.com/~media/files/news-and-insight/coronavirus-hub/covid-white-paper/lloyds_covid-19_white-paper_final2.pdf) (accessed 25 Apr 2021)).

한편, 보험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손실없는 기업휴지’ 리스크를 인수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손보상이 아닌 합의에 따라 미리 설정된 객관적 지표(index)에 따라 정해진 보상이 이루어지는 페러메트릭보험(parametric insurance)을 제안하기도 한다(송윤아/한성원, 위의 논문, 140면).

기업보험계약에 관한 test case 판결을 통해 COVID-19 유행의 상황에서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담보의 보상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보험계약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질병약관과 관련하여 정해진 반경내 실제적인 발병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험계약상 담보하는 사고(occurrence)로 인정하였다. 다만 1심의 판결과는 정해진 반경 외의 사고나 질병의 유행 자체를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접근금지 및 혼합약관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법률의 권능을 가진 접근금지 명령이나 포고의 경우에만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협소한(too narrow) 것으로 보고 이보다 보험보상의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업휴지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추세약관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COVID-19관련 영업감소추세를 감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뒤집고, 약관상 고려되어야 할 추세와 사정은 담보위험과 동일한 기본 혹은 근본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사정(즉, 본 사건에서는 COVID-19 대유행의 효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손해는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결과이어야만 보험자가 보상하게 된다. 영국 보험법에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인 'but for test'(복합적인 원인이 동시에 관여된 결과 발생한 사건에서 그중 하나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있었을까 하는 가정을 통해 원인을 유추하는 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즉 개별적으로는 불충분하지만 동등한 효과를 가진 여러 원인이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but for test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실시하였다. 이로써 약관에서 정한 COVID-19의 개별 발병사례가 없었더라도 전국적인 질병의 유행 및 정부의 조치에 의해 사업상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기업휴지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보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례(Orient-Express 판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담보약관의 불명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자들은 '재물손해 없는' 기업휴지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와 소송이후 지급될 보험금을 감안하여 향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질병약관이 담보위험에 대한 명확한 문구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건이 test case로 진행되었으므로 보상의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한 것에 그친다. 향후 개별적인 구체적인 보상사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약관해석이나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보험상품의 기업휴지 혹은 간접기업휴지 담보가 재물위험에 불과한 손해만 보상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성 보험에 있어 재물손해 이외의 지리적,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사이버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실패 등 점차 복잡해지는 기업경영상 리스크를 대비한 보험제도의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비재물성 사고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사업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바, 민간차원의 사회보장망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향후 국내 기업보험상품에도 금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하여 기업휴지 리스크를 확대 보상할 수 있는 약관과 상품구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인현/권오정, 『해상보험법』, 법문사, 2020.
명순구, 『민법학원론』 보정판, 박영사, 2017.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박덕영 역, 『영미법 입문』, 박영사, 2013.
최병수/이재복, 『영국해상보험법』, 보험연수원, 1983.
한창희, 『해상보험법』, 국민대학교출판부, 2017.

2. 연구논문 및 보고서

- 권태일, “COVID-19에 따른 영업손해배상보험자의 책임과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법리”,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21.
구종순/조성원, “해상보험에서 근인의 입증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1권, 한국해운물류학회, 1995.
경익수,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2015.
박세민, “해상보험법상의 인과관계이론(principle of causation)에 관한 해설”,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7.11.
송윤아/한성원,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20.
이현균,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의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과 적법성 담보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20.
이현균/권오정, “해상사이버리스크에 관한 영국보험업계의 대응과 시사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Baris Soyer,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3rd ed., London: Routledge, 2017.

FCA, *Claimant's Application For A Leap-Frog Certificate Pursuant to S.12 Administration of Justice*

■ 保險法研究 제15권 제2호 (2021)

Act 1969, 2020. 9.

Jonathan Gilman et al.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19th ed., London: Sweet & Maxwell, 2018.

Susan Hodges, *Cases and Materials on Marine Insurance Law*, London: Cavendish Publishing, 1999.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Press Summary -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v Arch Insurance (UK) and others {2021} UKSC 1*, 2021. 1.

3. 기타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NABO Focus』 제16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4.

ABI, COVID-19: Insurers expect to pay up to £2.5 billion for UK insurance claims, 2021. 2.20., (<https://www.abi.org.uk/news/news-articles/2021/02/covid-19-estimated-claims/>) (accessed 25 Apr 2021).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ALLIANZ RISK BAROMETER - identifying the major business risk for 2021, 2021.1(<https://www.agcs.allianz.com/news-and-insights/reports/allianz-risk-barometer.html>) (accessed 25 Apr 2021).

Artemis, “COVID-19 insured loss reports rise 21% in last quarter, near \$38bn”, 2021.4.7., (<https://www.artemis.bm/news/covid-19-pandemic-insurance-loss-reports/>) (accessed 25 Apr 2021).

Lloyd's, Supporting global recovery and resilience for customers and economies: The insurance industry response to COVID-19 (https://www.lloyds.com/~media/files/news-and-insight/coronavirus-hub/covid-white-paper/lloyds_covid-19_white-paper_final2.pdf) 2020 (accessed 25 Apr 2021)).

4. 판결문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Arnold v Briton [2015] UKSC 36.

Hart v Standard Marine Insurance (1889) 22 Q.B.D..

Global Process Systems Inc and Another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 (The Cendor MOPU) [2009] EWHC 637(Comm), [2010] 1 Lloyd's Rep 243(CA); [2011] 1 Lloyd's Rep 562 (SC).

Leyland Shipping Co Ltd v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Ltd [1918] AC 350, HL.

Lloyds (JJ) instrument Ltd v Northern Star Insurance Co Ltd, 'Miss Jay Jay' [1987] 1 Lloyd's Rep 32 CA.

Orient-Express Hotels Ltd v Assicurazioni Generali SpA [2010] EWHC 1186(Comm).

The FCA v Arch & others [2020] EWHC 2448 (Comm).

The FCA v Arch & others [2021] UKSC 1.

Thompson v Hopper(1856) 26 LJQB.

Wayne Tank Pump Co Ltd v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Corporation Ltd [1973] QB 57, CA.

<Abstract>

A Study o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sues caused by COVID-19

**- focused on UK Supreme Court Case (FCA v Arch
Insurance etc. [2021] UKSC 1) -**

Kwon, Oh Jung*

COVID-19 has resulted in a global crisis on a public health and hygiene. Governments has responded and working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to tackle the health crisis by means of requesting social distancing or even regional lockdown with vaccination. As a result, busines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retailers or restaurants, have been suffered by the loss of revenue or business interruption. Recently, UK Supreme Court held that, under the test case brought by the UK regulator representing policy holders, UK insurers should make claim payment on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caused by the COVID-19 and the following government actions. Supreme court agreed that each of the individual case of illness resulting from COVID-19 was a separate and equally effective cause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 Therefore, it is sufficient to prove that the interruption to the insured's business was a result of government action taken in response of cases of disease which included at least one case of COVID-19 within the geographical area covered by the disease clause. Insurers claimed that it cannot be said that 'but for' a case of COVID-19 at the premises, or within the specified radius, the insured's loss would have occurred. Court held that 'but for test' is not appropriate in this case. The 'but for test' ignores cases in which multiple events combine to produce a particular result but none of the individual event was either necessary or sufficient to bring about the result by itself. This case is regarded

* Marine underwriter,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 PhD Candidate (ABD) in commercial law, Korea University.

that the case agreed concurrent or multiple proximate causes. It is also regarded that this case brought some clarity but broadened coverage provided under current business interruption policies.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is playing a role in recovering the global crisis by paying claims and should make contribution to the resilience of economy by offering affordable terms and conditions on business interruption caused by non-physical damage such as failure of supply chain or pandemic disease.

Key Words :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Non-Physical Damage
Business Interruption, Disease Clause, Trends Clause,
Prevention of Access & Hybrid Clause, Causation,
Concurrent Causation, Construction of policy, The But
-for test

